

##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1999. 12. 28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대규모기업집단 「아남」 소속 아남반도체(주)의 채무보증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9909기업1338)	아남반도체주식회사는 1997년에 지정된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서 1998. 4. 1부터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액의 잔액의 합계액이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1998. 4. 1 현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총 504,946백만원의 채무보증을 하여 자기자본에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123,271백만원 초과함으로써 구공정거래법 제5528호(1998. 2. 24) 부칙 제2항 및 제5235호(1996. 12. 30) 제10조의2제1항 위반	<p>◎ 채무보증한도를 초과한 채무보증금액을 2000. 3. 31까지 해소토록 하고, 채무보증제한규정을 위반하지 말라는 시정명령</p> <p>◎ 과징금 납부: 365,400천원</p>
현대건설(주) 및 이콘 인터내셔널 리미티드사의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9909기결1380, 9909기결1376)	현대건설(주) 및 이콘 인터내셔널 리미티드사는 해양관광사업법인인 행담도개발(주)의 설립을 위한 이행행위를 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함에 있어,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로서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에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완료 전에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각각 행담도개발(주)를 설립하면서 '99. 8. 19 주식인수행위 즉 주식대금납입을 한 후에 현대건설은 8. 30, Econ사는 9. 4 기업결합신고를 함으로써 각각 공정거래법 제12조5항, 제12조4항 및 5항 위반	<p>◎ 과태료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건설(주): 15,000천원</li> <li>· Econ International Ltd. 사: 10,000천원</li> </ul>
농심켈로그(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9910광고1468)	농심켈로그주식회사는 '99. 4월 및 5월 중 2개 일간지에 “훌륭한 아침식사 켈로그 한그릇”이란 제목하에 “농심켈로그 한그릇과 한국인의 아침식단”의 영양을 그림으로 비교하여 광고하면서 “농심켈로그 한그릇”에 대하여는 씨리얼 40g+우유 200ml로 기준량을 정확하게 표시한 데 반하여 “한국아침식단”에 대하여는 쌀밥 1공기, 쇠고기 무국, 두부조림, 오이무침, 배추김치로만 표시하고 기준량을 표시하지 않아 비교의 합리성을 결하였으며, “농심켈로그 한그릇”은 영양소 함유량을 나타내는 실선영역을 점선으로 표시된 적정영	<p>◎ 부당한 비교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심 \* 결 \* 사 \* 례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양지수 영역을 초과한 것으로 표시한 반면 “한국아침식단”은 영양소 함유량을 나타내는 실선영역이 비타민 C를 제외하고 점선으로 표시된 적정영양지수 영역에 미달하는 그림으로 표시하였으며, 동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 중 “... 우유와 함께 먹는 씨리얼 한그릇에는 비타민 A, B<sub>2</sub> 등 모든 영양소 함유량이 높아 대강 차린 아침상보다는 훨씬 영양이 많음을 알 수 있다”라고 표시하여 전체 영양소 중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영양소만을 비교하여 마치 “농심켈로그 한그릇”이 모든 영양소에 걸쳐 “한국아침식단”보다 영양소 함유량이 많은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㉞)중앙M&amp;B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 (9907유거1115)</p>	<p>주식회사 중앙M&amp;B는 '99. 4. 24 「여성중앙2」의 5월호(이하 “경품부상품”이라 함)를 90,000부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1부당 8,500원에 판매하면서 제3자인 (㉞)경원P&amp;L로부터 2,100원에 구입한 ‘카타리나 지오 립스틱 및 립라이너’ (이하 “정식경품”이라 함)를 동 잡지를 구입한 80,66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자신의 총판 중 하나인 서경서적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교보문고와 영풍문고로부터 5월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고객에게 줄 것이 없느냐? 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를 요청해오자 「여성중앙2」의 '99. 2월호 경품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3자인 광양산업으로부터 1,800원에 구입한 ‘쥬리아 소네트 화이트닝 아이크림’ (이하 “추가경품”이라 함)의 채고 중 일부를 서경서적을 통해 교보문고에게 70개, 영풍문고에게 60개, 도합 130개를 제공하였고, 교보문고와 영풍문고는 매장에서 경품부상품을 구입한 130명의 고객에게 제공받은 정식경품과 추가경품을 함께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품부상품의 판매부수 80,660부 중 80,530부를 정식경품만 제공되었고 나머지 130부는 정식경품과 추가경품이 함께 제공되었는데, 정식경품과 추가경품의 제공 가격은 구입가격 합계액 3,900원에 경품고시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25%를 가산한 4,875원으로 소비자경품류의 적법한 제공한도인 3,000원을 1,875원 초과하여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p>	<p>◎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1999. 12. 30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한국쓰리엠(주)의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9909경축1273)	한국쓰리엠주식회사는 자신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대리점은 자신과 별개의 사업자로서 딜러가격이나 소비자가격을 스스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주식회사 썬이퍼스를 비롯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과의 연락에 사용하는 PC 통신을 통하여 대리점의 최저도매가격을 가격표상의 기준가격에서 10%를 더함으로써 재판매 가격을 지키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대리점들에게 통보하였으며, 특히 '98. 7월에 열린 전국 대리점 중 BIG 7 사장단 회의에서 면체여과식 마스크 8710L의 판매가격을 600원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의제를 채택하여 토의를 하던 중 주식회사 썬이퍼스가 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판매가격유지가 불가능함을 발표하자 자신의 마케팅 정책에 위배된다고 하여 8월 한달동안 동 회사에 대한 8710L의 출고가격을 기준가격 500원보다 높은 550원으로 하였고, 동 회사가 재판매가격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대리점에게는 '99. 7. 1부터 총 8%의 가격할인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회사에게는 전혀 가격할인 혜택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회사보다 늦게 잠정대리점이 된 그린코리아에 대하여는 '99. 6. 21 정식대리점으로 인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매출실적이 더 좋은 동 회사에 대해서는 정식대리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 위반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1999. 12. 31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대우자동차판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9903기획0292)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는 '99. 3. 4부터 4. 16까지의 기간동안 주요 일간신문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준중형 승용차 「누비라Ⅱ」에 대해 광고함에 있어 '서울 ⇨부산 누비라Ⅱ로 힘차게 왕복할 것인가? 아, 반대로 힘없이 왕복할 것인가?' 라고 표현하면서 광고문안에서 특히 노란색 글씨로 경쟁사업의 제품인 「아반테 린번」과 발음이 비슷한 "아, 반대로 ..."라고 표시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누비라Ⅱ」는 서울과 부산을 힘차게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이미 광고한 중앙일간지 중 광고횟수 또는 광고비 지출이 많은 순으로 3개 중앙일간지(전판)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왕복할 수 있는 반면 경쟁사업자의 「아반테 린번」은 힘없이 왕복하는 것처럼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자동차를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하였으며, 또한 자동차형식승인서상의 「누비라Ⅱ」의 연비는 16.0km/l로서 경쟁사업자의 「아반테 린번」의 16.9km/l 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준중형 최강의 파워와 연비'라고 표현하여 일반소비자가 「누비라Ⅱ」가 '파워'뿐만 아니라 '연비'에 있어서도 준중형 승용차 중에서 최고라는 의미로 인식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에 5단×1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현대자동차(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9904기획0421)</p>	<p>현대자동차주식회사는 '99. 3. 16부터 4. 15까지의 기간 동안 TV방송을 통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자동차인 「아반테 린번」을 광고함에 있어 CF에서 한번 주유로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승용차는 린번엔진을 장착한 자신의 자동차 뿐이고 다른 자동차판매회사는 그러한 차가 없으므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하고자 한다고 인식되는 내용으로 표현하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가 실험한 결과 자신의 경쟁사업자의 제품인 「누비라Ⅱ」도 서울과 부산간을 왕복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음에도 「누비라Ⅱ」는 그러하지 못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3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주)한국인삼공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9901독관0117)</p>	<p>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는 인삼전문점·건강식품점·약국 등 소매상인 판매점과의 거래약정서에 자신이 제시한 판매가격 준수 및 자신의 판매점 관할지점 이외의 지점과 이중거래 금지를 거래처 및 계약시기에 따라 모두 또는 어느 하나를 약정조항으로 정함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조항을 두고, 특히 프라이스클럽 대전점의 홍삼류 제품 판매희망에 따라 '98. 5. 26 체결한 거래약정서에는 이러한 약정조항과 별도로 약정서 말미에 "판매가격을 소비자가 10%까지 할인함"이라고 첨기하여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자신이 지정한 가격대로 판매토록 강제하였으며, 식음료나 약품 등의 도매상인 음료대리점과 일부 홍삼음료제품의 거래를 위한 거래약정서에는 거래상대방의 영업지역 제한 및 영업대상</p>	<p>◎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해당거래처에 각각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제한을 거래처나 거래품목에 따라 모두 또는 어느 하나를 약정조항으로 정함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약정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거래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2000. 1. 8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㉞)롯데리아의 거래상지 위남용행위 및 거래거절 행위에 대한 건 (9903유거0307, 9907유거1023)	주식회사 롯데리아는 '98. 9. 1부터 '98. 9. 15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서울랜드 등과 같은 일부 특수점포를 제외하고 전국의 전점포가 참가하는 “불고기버거 1억5천만개 판매들과 불고기버거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하면서 “불고기버거”는 기존 2,000원에서 1,600원, “불고기버거 세트”는 3,200원에서 2,500원으로 할인판매하고 그 할인비용을 가맹계약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동 행사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자의 행사참여 가능성, 상품의 할인액 범위 및 할인비용의 부담주체 등을 가맹계약자와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였으며, 자신이 공급 또는 지정하는 상품을 취급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상품은 구입·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없도록 약정된 가맹계약서 제6조에 의하여 가맹계약자에게 가맹사업에 소요되는 상품을 공급하여 왔으며, 가맹점의 주방기기 및 비품은 자신이 정하는 동종의 규격 및 모델로 설치하도록 하고 신규로 가맹점을 개점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자는 자신에게 주방기기 및 부대설비의 선수금으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잔금은 점포개점시 정산하도록 약정한 가맹계약서 제15조와 제7조에 따라 가맹계약자에 대해 냉동고, 냉장고 등 총 25개의 점포설비 등을 본사가 지정하는 공급업체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고 비용정산은 자신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는 등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고 강제하였으며, 또한 자신의 계약자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대전 용두점이 '98. 9월에서 '98. 11월 동안 연속 6회에 걸쳐 원부재료 대금을 연체하였고, 인근 가맹점 대표로 하여금 개인적인	◎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거래거절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맹점계약서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불만사항을 담은 건의서에 집단적으로 서명하도록 유도하고 '99. 2. 22 자신이 주관하는 컨벤션행사의 중식 시간 중에 개인적 사유로 소동을 일으켜 전체 일정계획에 차질을 발생하게 하는 등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동 컨벤션에 용두점의 점장이 불참하였으며, 타 사제품의 오렌지주스를 비치·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콜라가격 등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실추하였다는 이유로 동 점장에게 가맹계약이 해지됨을 '99. 6. 21 통보하고 '99. 7. 1부터 가맹계약을 종료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계약자와의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호 위반	

2000. 1. 12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세진컴퓨터랜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9911소기1650)	(주)세진컴퓨터랜드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애프터서비스(이하 "A/S"라 함)와 관련하여 광고함에 있어 무상 A/S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95. 5월에서 '95. 9월까지 TV광고를 통하여 자신의 울산점, 영등포점, 평촌점, 부평점 등의 오픈을 알리면서 자막과 멘트를 통해 "무상수리", "평생 A/S", "주요 부품 교체시 부품원가 부담"이라고 표현하였고, '95. 5월과 '95. 10월 및 '96. 1월에 전단광고를 통하여 "돌풍서비스3 컴퓨터 평생 무상수리 보장", "차별화3 평생 A/S, 1, 2년 A/S가 아닌 평생 A/S를 보장합니다"라는 제목하에 "한번 세진 가족이 되시면 전국 어디서나 평생 무상출장 수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계 최초 평생 무상수리 보장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96. 10. 25 및 '97. 1. 14자 동아일보 광고를 통하여 "컴퓨터 119, 24시간 도움센터 탄생!", "연중무휴 컴퓨터 무료교육, 무상수리, 평생 A/S 등으로 컴퓨터업계에 서비스 혁명을 일으킨 세진이 또다시 서비스의 차원을 높였습니다"라고 표현하여 광고하였으나, '97. 4월부터 현재까지 동 광고시행 당시에 물품을 구입한 고객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 대한 A/S 제공시 5,000원. '99. 1. 1 이후에는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37cm의 크기로 3회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 : 50,000천원</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8,000원의 출장비와 수리내용에 따른 서비스기술료 및 부품비를 받고 있는 바, 마치 자신으로부터 컴퓨터 등을 구입한 고객은 고장의 원인 등에 관계없이 부품비를 제외한 출장비 등 A/S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평생 동안 무상으로 A/S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위반	

2000. 1. 1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삼성물산(주)의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9909유건1377)	삼성물산주식회사는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삼해상시(주)로부터 직매입한 설날세트상품의 판매잔여분을 일방적으로 반품하였으며, '99. 1. 1부터 3. 31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조양유통상사 등 1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제품 중 자신의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파손품을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등 총 3,533천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부당하게 반품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 위반	◎ 부당한 반품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9910광고1464)	한국전기통신공사는 '99. 9.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동 소재 뉴타운웨딩홀에서 개최한 「분당지역정보통신설명회」를 시작으로 9. 10까지 동 지역에 배포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안내전단 3,000부를 통하여 자사와 경쟁사인 하나로통신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ADSL에 대한 이용요금과 설치비를 비교하여 광고함에 있어 ADSL-POP 및 ADSL B&A 등 일부품목에 대해 경쟁사의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기하는 반면, 자사의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표기하면서 각주를 통해서만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임을 표기하였고, 가입설치비에 대해 경쟁사의 설치비는 신규전화 가입을 전제로 표기한 반면, 자사의 설치비는 기존전화 가입을 전제로 하여 표기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각주로만 부가하여 표기하는 등 경쟁사에 비해 자신의 이용요금이나 설치비 등이 저렴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광고하였으며, 동 전단 말미에서 경쟁사인 하나로통신에 가입할 경우에 겪게 되는 고객불편사항에 대해 설명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면서 하나로통신도 별도의 전화국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통신 가입 후 전화가 고장날 경우 "전화국에서 고장수리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표현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위반	

2000. 1. 17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샘이깊은물(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9911전사1548)	샘이깊은물주식회사는 코오롱체육단, 대한축구협회, 대한역도연맹 등의 체육회와 먹는샘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소재 PET병 제조사 오상기업에 의뢰하여 "코오롱마라톤선수단 먹는샘물 공식후원업체, 한국월드컵축구선수단 공식선정 먹는샘물, 역도대표선수단 공식선정 먹는샘물"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PET병 0.5l 3,200개, 1.8l 1,900개를 '99. 8. 9 납품받아 생수를 제조하여 대리점에 공급·유통시켜 마치 공신력 있는 체육회에 공급하는 생수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표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0. 1. 19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대왕파이낸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9911부사1545)	주식회사 대왕파이낸스는 '99. 1.월에서 '99. 10월 사이에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안내전단 및 신문을 통하여 자신은 일반상업상의 주식회사일 뿐인데도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전문금융회사"라고 표시하고, 고객들이 자신에게 맡긴 자금은 법적·제도적 보장수단이 없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원리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에도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표시하였으며, 자금을 맡긴 고객은 주식취득이 아니라 배당금을 지급받을 뿐이며 주주가 아님에도 "출자주주"라고 표시하였고, 해외금융권과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내업체 최초 미국, 홍콩 등 해외금융권과 라이센스 채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및 1개 부산지방일간지에 3단×10cm의 크기로 각각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70,000천원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결” 등의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위반	

2000. 1. 20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동양화장품의 구속조진부거래행위 (9911경축1554)	(주)동양화장품은 1996. 10월부터 자신과 거래하던 화장품대리점 청아유통이 자신으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자신의 관할지역을 벗어나 소매점에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1999. 8. 23 이후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거래약정서 제3조에 대리점들로 하여금 자신의 관할지역을 벗어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일정액의 공탁금을 자신에게 예치토록 하고 특정대리점이 자신의 관할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판매하는 경우 예치한 공탁금에서 공제하는 등 부당하게 거래지역과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계약체결 대리점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1개 중앙일간지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하고, 대리점과 체결한 거래약정서 제3조를 삭제 및 수정토록 함
부산주류도매업협회 및 경남·울산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9909부사1278)	부산주류도매업협회 및 경남·울산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영남·제주지역 주류제조회사 대표들을 '99. 2. 9 부산주류도매업협회의 회의실로 불러 당해 지역 주류도매업협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주제조회사 대표들에게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용기보증금을 받지 말든지 또는 지박스형 소주의 출고를 중단하든지를 양자택일하도록 요구하여, 대선주조주식회사(이하 "대선주조"라 함)와 주식회사 무학(이하 "무학"이라 함)으로부터 5월까지의 지박스형 소주의 출고를 중단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3월말경에는 부산주류도매업협회가 대선주조의 영업이사과 무학의 전무이사 등 소주제조회사의 실무책임자들을 불러 지박스형 소주의 출고중단에 대하여 재차 다짐을 받은 후 대선주조와 무학이 실무책임자간의 협의를 거쳐 4. 7자로 대형할인점 등에 대한 지박스형 소주의 출고를 중단하자 부산주류도매업협회는 대선주조의 지박스형 소주의 출	◎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부산지역과 경남지역에서 각각 발행하는 1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연명으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부산주류도매업협회 : 6,700천원 · 경남·울산종합주류도매업협회 : 5,500천원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고여부를 5월중 2일간, 경남·울산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무학의 출고여부를 11. 2부터 11. 4까지 3일간 각각 자신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류제조회사의 지박스형 소주의 출고여부를 감시하게 하였으며, 또한 경남·울산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9월경부터 소주사재기로 인한 가수요현상으로 피박스가 부족하여 소주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무학으로 하여금 '업소용'에 한하여 지박스형 소주를 생산하도록 하되 이를 자신의 구성사업자에게만 공급하도록 요구하여 승낙을 받아내었는데, 무학이 이를 어기고 '가정용' 지박스형 소주를 생산하여 대형할인점 등에 공급하자 11. 2부터 11. 5까지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무학의 소주 전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지시하여 전개토록 하여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울산광역시 지역 주류도매업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 26조제1항제1호 위반</p>	
<p>대구경북시멘트가공업협동조합의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 (9907구사1031)</p>	<p>대구경북시멘트가공업협동조합은 '98. 8. 5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구광역시 인근 경북지역(이하 "대구시권"이라 함)에 소재한 인터로킹제품 생산조합원을 대상으로 「대구시권 인터로킹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대구시권 8개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들이 생산한 인터로킹제품 전량에 대한 판매권을 조합측이 위탁받아 판매를 전담하는 형태의 「인터로킹 사급물량 공동판매사업」(이하 "사급공판사업"이라 함)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8. 27 정기이사회에서 사급공판사업 및 이와 관련한 운영지침을 승인하고, 사급공판사업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대구시권 조합원의 영업담당 실무자들로 구성된 「대구시권 인터로킹 실무자회의」를 8월초부터 1월말까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조합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금지시키고 수주권을 지정해 주었으며, 8월초 「대구시권 인터로킹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로킹제품 사급물량의 전 규격에 대한 판매가격을 조달단가의 110%를 적용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였으며, 9. 25 대구·경북지역 「전체 인터로킹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로킹 생산 전 조합원 21개사 중 20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권에 포함되지 않은</p>	<p>◎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경북지역 인터로킹생산조합원 13개사에 대해서도 대구시권과 동일한 형태의 사급공판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대구·경북지역 인터로킹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며, 또한 자신의 구성사업자인 (주)조일콘크리트가 단체수의계약 관련 수수료 과다징수의 부당성에 대해 서면 질의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질의내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자 동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조합원들에게 불신을 가지도록 선동하는 행위를 하여 자신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99. 5. 18 개최된 1999년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하고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차기 총회시까지 광급물량배정을 중지할 것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위반</p>	

2000. 1. 25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EM코리아의 부당광고 행위 (9910광고1465)</p>	<p>EM코리아는 1999. 9. 8부터 10. 28까지 국민일보 등을 통해 (주)현민시스템이 제작한 컴퓨터용 CD인 알짜배기 시리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컴퓨터용 CD 9개 중 1개 품목에 대해서만 교육용 품질인증을 받았음에도 "교육용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한 우수소프트웨어라고 표현하여 마치 전체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하고, 출시기념 특별행사가격으로 98,000원에 할인판매한다고 하면서 원래 가격은 220,000원, 152,000원, 158,000원 등으로 달리 표현하는 등 최근 상당기간 거래가격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가로 판매하던 상품을 특별히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p>	<p>◎ 부당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